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73
----------	------

제출연월일 : 2026. 7. .

제출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시민의 공익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 조항 신설

- 1) 제2조제4호의 내용을 신설 조항으로 옮겨, 신고 요건에 해당되는 부조리 내용을 분리하여 명시하도록 함.

나. 신고대상의 확대

- 1)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대상에서 시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다. 신고기한의 연장

- 1) 현행 규정의 신고기한(2년)이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 부가금 부과사유의 시효) 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징계시효(3년)와 일치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조리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이내의 신고기한을 적용하도록 함.
- 2)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연장함.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일부개정안)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 기간: 2026. 4. 22. ~ 2026. 5. 13. (21일간)

나. 의견 내용: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원안 동의

9. 참고사항: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부조리 행위”를 “부조리”로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시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원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라.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마.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란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신고대상) 신고자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고의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신고기한) 제2조의2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을 신고기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의 감사부서” 를 “제2조의2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시 감사부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에 등록하거나, [별지]서식에 의한” 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에 등록하거나, 별지 서식에 따라”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있다” 를 “있으며,” 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 중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에” 를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에”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등으로 부득이 한” 을 “등 부득이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심사결정은 「하남시 포상 조례」 제12조 제2항 규정” 을 “심사결정은 「하남시 포상 조례」 제12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급대상자에게는[별지]” 을 “지급대상자에게는 별표” 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판명되거” 를 “밝혀지거”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조” 를 “제2조의2” 로 하며, 같은 호 및 제3호 중 “신고 된” 을 각각 “신고된”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부조리에 대한 것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서명		법무감사관
입 안 자	팀장 직위 · 성명	청렴조사팀장 김 지 훈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김 도 원 (031-790-522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 근로자와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시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원 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라.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마.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

<신 설>

2. (생 략)

3. “부조리 신고 포상금” (이하 “신고 포상금” 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4.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고의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임 등을 승인·동의·추천
· 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
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란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
-- 부조리-----
-----.

<삭 제>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신 설>

제3조(신고기한) 제2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2조의2(신고대상) 신고자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고의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신고기한) 제2조의2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중대범죄

제4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시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에 등록하거나,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에 부조리 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고자가 등록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신
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을 신
고기한으로 한다.

제4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제2조의2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시 감사부서-----.

[illegible]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처리) ① -----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

제12조(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①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결정은 「하남시 포상 조례」 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하남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제13조(포상금 지급) ① 제12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
--- 등 부득이한 -----

-----.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범위-----

제12조(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① ----- 심사결정은 「하남시 포상 조례」 제12조제2항-----
-----.

② -----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포상금 지급) ① -----
----- 지급대상자에

계는[별지]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해당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 또
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생 략)

제14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
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
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3조에 따라 신고기한을 경
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
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서 이미 인
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 9. (생 략)

계는 별표-----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포상금 지급제외) -----

-----.

1. -----
-- 밝혀지거-----

2. 제2조의2-----
---- 신고된 ----
3. --- 신고된 -----

--
4. ~ 9.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1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5. 7. 1.]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